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근로자가 상사·동료의 폭행·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계속 그 승인을 요구하면서 무단 결근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 면직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 부서의 상사·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 부서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가 그 휴직신청의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 결근이 회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단결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 회사가 징계 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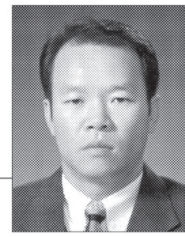
Q 동료에 대한 폭행으로 그를 사직케 할 정도면 피면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보직 변경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직무와 관계없는 자신의 사사로운 심부름을 즉시 응해주지 않는다 하여 근무시간 중 다른 동료직원들도 근무하는 사무실내에서 직무에 열중하고 있는 과중한 미혼여성 동료직원을 마구 안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좁도 시켜 출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끝내 그에 따른 수치심과 모욕감에 못 이겨 그 직을 사퇴까지 하게 한 근로자의 위 소위는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 사원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서 위 인사규정 각 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진 동기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정도는 매우 무거워 이는 위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중 과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바 아니므로 비록 위 인사위원회가 위 진단서를 허위인줄 모르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삼았다 하더라도 직원에 대하여 조건부 파면결의에 그친 것은 근로자의 형편을 감안까지 한 것으로 보여져 그 결의는 적법하고 거기에 어떤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2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수용보상금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Q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甲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등기만을 믿고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에 의한 압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乙의 근저당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인지요?

A 토지수용법 제69조에서 "담보물권의 목적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담배 담보물권은 그 목적이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토

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담배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분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등기만을 믿고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에 의한 압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乙의 근저당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인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일반채권자가 부당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피전부채권의 표시에서 담보물권자의 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였으나, 담보물권자가 담보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의 범위를

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권 중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가등기담보물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령의 문면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가등기담보물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증가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며, 그 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94다25728)"고 하였습니

☞문의: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 나는 하루 종일 성교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내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아닌지 걱정이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A 또래의 친구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여

학생의 뒷모습들을 훑어보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성과 관련지어 생각하기도 하고 야한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르노를 보면서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남학생은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포르노 잡지, 야동 등 색스에 관한 것을 즐겨 보게 됩니다. 가끔은 눈요기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탈의 실, 목욕탕, 수영장 중 여성의 나체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갖거나 강한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사회는 성에 대한 관심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인 것에 대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에 관한 관심을 성교에만 국한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행위의 상대가 되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성에 대한 관심으로 여성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여성과의 진실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금리파트장 신재우



Q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입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 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 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

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자 ① 기본요금: 200kWh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요금: 21,097원 - 처음 100kWh x 55.10원=5,510원 - 다음 100kWh x 113.80원=11,380원 - 나머지 25kWh x 168.30원=4,207.5원 ③ 요금합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 x 0.037원) : 22,527원 x 0.037원=830원(원미만절사)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527원 x 0.1=2,253원(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 : 22,527원+830원+2,253원=25,610원(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문의: 포천지점 수요금리파트 (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과장 김대성



안면신경마비

1.안면신경마비의 증상 안면신경의 기능 중에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눈물샘과 침샘을 지배하며 혀의 맛을 느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면신경마비에는 눈물샘이나 침샘의 이상, 맛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① 마비 직전에 귀 뒤쪽이 빠근하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② 눈을 위로 치켜 뜰 때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③ 눈이 잘 감기지 않습니다.

4.이이 돌아갑니다. 5.밥을 씹을 때 밥알이 뺨에 자주 끼입니다. 6.마비된 쪽으로 국물이 흘러내립니다. 7.입술 끝이 아래로 처집니다. 8.눈물이 나는 눈이 뻑뻑합니다. 9.한쪽 귀에서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10.마비된 쪽에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2.뇌졸중(중풍)과의 차이점 ① 뇌졸중은 중추성 안면신경 통로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며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있으면서 흔히 반신마비, 언어장애, 발음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됨. ② 안면신경마비는 말초성 안면신경 통로(뇌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가지 한개)에 이상이 생겨 발생함으로 뇌 자체의 혈류 장애로 발생하는 중풍과 같은 무서운 병은 아님. 3.안면신경마비의 원인 찬바람을 쏘이면 발생한다고 믿는 일반인들이 많으나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불명의 안면신경마비를 벨 마비라고 부릅니다. ① 원인 불명: 벨 마비 ② 염증: 바 이러스의 침투 ③ 외상: 머리뼈 골절과 함께 안면신경손상 ④ 종양: 안면신경의 압박 ⑤ 감염: 중이염 합병증 4.치료 ① 부신피질호르몬 ② 항바이러스 약물 ③ 재활치료 ④ 안과적 치료: 눈을 감지 못해서 발생하는 각막염 치료 ⑤ 수술적 치료 5.예후 ① 가장 흔한 벨 마비의 경우 정도가 경하면 예후는 비교적 좋습니다. ② 마비가 심한 경우 약 10~20%의 환자에서는 얼굴의 일그러짐이 남습니다. ☞문의: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031-539-9169)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재년의 학자금 보조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징수합니다.】

Q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새내 근로복지조건에 따라 자녀의 대학교등록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갑근세를 내야 하는데 맞는지 맞는지요?

A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상여는 물론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그리고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과 종업원의 수확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심지어는 교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학자금을

보조받는 경우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학자금을 받는 것일 때는 비과세 대상이며,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월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운행유지비,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소수보장성보험", 우리시주조환원인 소액주주 근로자가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중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학자금 보조금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연 일정액을 학자금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대학생 1인당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문의: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자연과 함께하는 유럽식 목조주택 『프라임 리조트』

명성산과 산정호수가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

다양한 객실

60평형(1개동), 40평형(6개동), 35평형(8개동), 30평형(2개동), 25평형(3개동), 22평형(6개동), 15평형(3개동)

부대시설

세미나실/바베큐큐/재즈카페/체육시설/산책로/명성산등반/야외공연장/정원

리조트

먹거리/레저/이벤트/주변여행지

